

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군포시 금정동 744번지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2월 20일

군 포 시 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 (소규모재건축사업)
- 나. 명 칭 :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 치 :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44번지
- 나. 면 적 : 5,473.90m²

3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- 가. 사업의 착수일 : 2025년 12월
- 나. 사업의 착수일 : 2028년 12월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가. 조합의 명칭 :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고용주)
- 나. 사무소 소재지 : 군포시 번영로 756 관리사무소

가. 사업시행구역 결정 조서

도면표시 번호	사 업 명	위 치	면 적	비 고
-	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	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44번지	5,473.90㎡	-

나. 사업시행구역 결정 사유서

구 분	도면표시 번호	위 치	면 적	비 고
신 설	-	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44번지	5,473.90㎡	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 개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 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재

다. 지형도면고시도

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주택정책과(☎031-390-046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